

#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3464호
- 나. 제 안 자 : 김길영 의원(찬성자 21명)
- 다. 제 안 일 : 2026년 2월 9일
- 라. 회 부 일 : 2026년 2월 12일

### 2. 제안이유

- 제10조제1항은 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출석의원 과반수”로 표기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해당 표현은 명백한 용어 오기로서 해석상 중대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정비하여 조문의 명확성과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제10조제1항 중 “출석의원”를 “출석위원”으로 정비함(자구 수정)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자인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함에 있어 “출석의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의결 주체와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 “출석위원”으로 수정(안 제10조제1항)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생략)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 ---- 출석위원 ----- ----- ② (현행과 같음)

### 나. 검토 내용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은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에서 잘못 사용된 용어를 바로잡아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수정함으로써 의결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조문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조례 제10조제1항은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출석의원 과반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조 같은 항 전단에서는 “재적 위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8조1)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1)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디자인산업 소관 실·본부·국장 및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의원”은 ‘국회나 지방 의회와 같은 합의체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위원”은 ‘선거나 임명에 의하여 지명되어 단체의 특정 사항을 처리할 것을 위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현행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sup>2)</sup>하고 디자인산업의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sup>3)</sup>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원’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의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정비하는 것은 조례 내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의결절차에 관한 조문 해석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에서 용어를 잘못 사용한 부분을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수정함으로써 의결 주체 및 조문의 해석과 적용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임

2)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디자인산업 소관 실·본부·국장 및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디자인산업의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